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11 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 장종태·박해철·김 윤

장철민 • 박지원 • 김남희

조승래 · 김선민 · 소병훈
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·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 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4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2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4(생활임금 지급 조건부 계약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 행하는 근로자(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급사업 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「최저임금법」 제24조의 2에 따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4(생활임금 지급 조건부
	계약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
	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
	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
	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
	(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
	법률」에 따른 수급사업자가
	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)에
	대하여 「최저임금법」 제24조
	의2에 따른 생활임금을 지급하
	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
	<u>킬 수 있다.</u>